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6
----------	------

발의연월일 : 2016. 8. 2.

발의자 : 김도읍 · 유기준 · 정갑윤

권성동 · 김성원 · 정태옥

경대수 · 김태흠 · 권석창

홍철호 · 김명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제19조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 단
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